

## 2013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

연구개발특구 R&D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2013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(대덕·광주·대구·부산)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3년 4월 9일  
미래창조과학부

### I 공통사항

#### ■ 사업목적

- 특구 R&D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국가 및 광역경제권내의 경제성장을 선도
- 특구 혁신주체 육성 및 '기술개발→사업화→재투자'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한국형 혁신클러스터 육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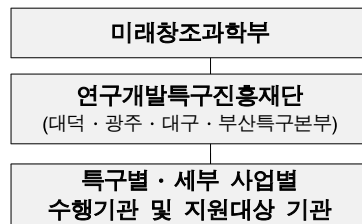
#### ■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

- '불입'의 특구별 추진하는 세부사업 내용 및 기간 참조

#### ■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

- '불입'의 특구별 추진하는 세부사업의 공모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참조

#### ■ 사업 추진체계



#### ■ 신청자격

- 『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
- 국·공립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, 산업기술연구조합, 전문생산기술연구소
- 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
- 한국디자인진흥원, 산업디자인전문회사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, 한국생산성본부
- 사업자단체, 산업기술단지(테크노파크)사업자
- 『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』에 의한 소기업
- 『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
- 『민법』 제32조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법인
- ※ 특구별·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구별·세부 사업별 시행계획을 반드시 참조

#### ■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

- '불입'의 특구별 추진하는 세부사업의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참조

#### ■ 사업비 지원규모

- '불입'의 특구별 추진하는 세부사업의 사업비 지원규모 참조

#### ■ 기술료 징수 여부, 기준 및 방법

- '불입'의 특구별 추진하는 세부사업의 기술료 징수 관련 내용 참조

#### ■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

- '불입'의 특구별 추진하는 세부사업의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관련 내용 참조

#### ■ 지원제외대상

-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(RFP)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,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
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, 참여기관,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기업의 부도
 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채납처분을 받은 경우
  -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 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)
  -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 (단,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, 신용평가등급 'BBB'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)
  - 자본전액잠식
  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“미반영” 또는 “부적정”
- ※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,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

○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유효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한 경우(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%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,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)

## ■ 관련 법령 및 규정

-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
-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
- 기술료 징수 및 사용·관리에 관한 통합요령
-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
-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·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
-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등

## ■ 용어의 정의

- 공공기술 : 공공연구기관\*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
- \* 공공연구기관 :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5호에 따른(국립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, 국방과학연구소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)

## ■ 보안등급 분류

-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(보안/일반)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
-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
  -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  -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
  -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  - 「대외무역법」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
## ■ 사업의 전담기관

-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(대덕·광주·대구·부산 연구개발특구본부)

## ■ 2013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(R&D) 시행계획 공고 및 첨부자료 안내

- 시행계획 공고 및 첨부자료 다운로드 사이트
  - 미래창조과학부([www.msip.go.kr](http://www.msip.go.kr)), 연구개발특구포털([www.innopolis.or.kr](http://www.innopolis.or.kr)), 대덕테크인사이트([www.dit.or.kr](http://www.dit.or.kr)) 및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(<http://pms.innopolis.or.kr>)

## ■ 문의처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 이메일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 관련 문의              | 사업별 담당자 참조<br>(특구별·세부 사업별 시행계획 내 별도 표기)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관리시스템<br>(전산 접수) 문의 | 황지영 전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42-865-8871 | chris@innopolis.or.kr |

## ■ 사업설명회

| 지 역 | 일 시                 | 장 소                 | 장소 문의처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대전  | '13. 4. 16(화) 14:00 |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층 컨퍼런스홀 | 042-865-8861 |
| 광주  | '13. 4. 15(월) 14:00 |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회의실 | 062-576-9301 |
| 대구  | '13. 4. 17(수) 14:00 | 신기술산업지원센터 2층 대강당    | 053-592-8356 |
| 부산  | '13. 4. 16(화) 15:00 |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층 대강당  | 051-329-5414 |

※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연구개발특구포털([www.innopolis.or.kr](http://www.innopolis.or.kr)) 및 대덕테크인사이트([www.dit.or.kr](http://www.dit.or.kr))에 공지 예정

## ■ 기 타

-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예산은 소관부처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
- 소관부처(미래창조과학부) 정책에 따라,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신규 사업 규정 제·개정될 경우는 사업별 적용규정이 신규 사업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

## ■ 불 입

- 불입 1 : 2013년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세부내용
- 불입 2 : 2013년 광주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세부내용
- 불입 3 : 2013년 대구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세부내용
- 불입 4 : 2013년 부산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세부내용
- 불입 5 : 2013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특구별 신청양식
- 불입 6 : 2013년 특구기술사업화사업 지정공모 RFP